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권익위, 베트남과 반부패 협력회의 성료(23.10.23)
- ②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23.10.31)
- ③ 세종 한센인마을 공유지 갈등 ‘조정’으로 해결(23.10.12)
- ④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23.10.16)
- ⑤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23.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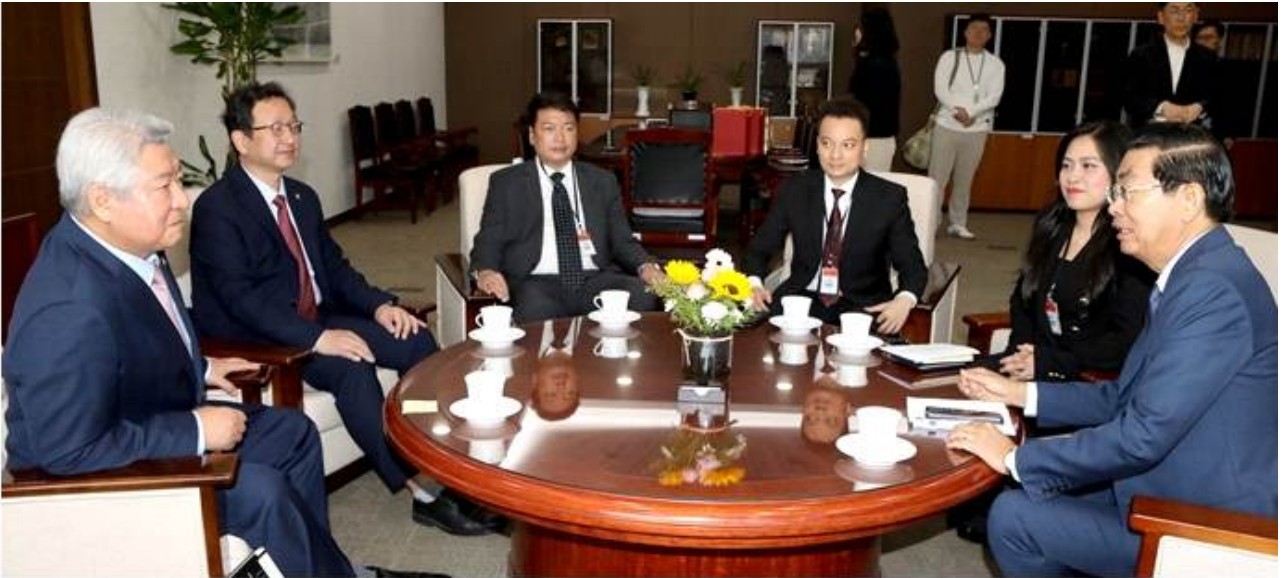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의 장(場)’ 마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에 기반해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23. 10. 23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위원장 판 딘 트락(Phan Dinh Trac), 이하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반부패 협력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Vo Van Dung) 부위원장 외 대표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 현황,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체계 등 주요 청렴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양국의 향후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종합청렴도 평가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요인의 발굴·개선을 유도하는 제도

베트남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후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이자, 우리나라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이자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 2월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반부패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정책교류 등 활발히 협력하고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 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국민권익위로부터 전수받은 다양한 반부패 정책 및 제도 경험은 베트남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행정청이 사유지에 배수로 무단 설치...토지 사용료, 경계측량 비용 지급해야

(‘23. 10. 31 국민권익위)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호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호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호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 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한센인 마을 40년 숙원 ‘공유지 갈등’ 해결

공용주차장으로 무상 이용토록 세종시-한국국토정보공사 간 협의·조정

(‘23. 10. 22 국민권익위)



세종 한센인 마을 정착민들의 40년 넘은 공유지 숙원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세종특별시청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공유지 갈등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세종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한센인들이 1973년경 이후 세종 부강면 등곡리 산143번지(구 청원군 부용면) 폐광산 일대 ‘함바집’을 수리하고 임야를 개간하여 거주하기 시작했고, 1977년경 충광교회 건립 이후 주변 한센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정착촌(충광마을)이 형성됐다.

충광마을 정착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한센인들로 열악한 복지와 환경 속에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착민들은 “구 청원군 때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마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수년 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온 세종 부강면 등곡리 400-12, 400-13 시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불하해 주거나 무상 사용토록 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관리하기 위해 지목변경,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정착민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여 이 민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MOU) 및 음부즈만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이 민원 토지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측량비용 경감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착민들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이 원활히 시행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

이나마 해소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복지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국민권익위 “자기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소유자로 판단해야”

(‘23. 10. 16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ㄱ씨는 일반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 승인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의 착오로 소유자를 ㄱ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ㄴ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ㄴ으로 생성됐다.

이에 ㄱ씨는 “해당 건축물은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ㄴ에서 자신으로 정정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 ㄱ씨가 건축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 업무 대행 건축사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했으며 ▲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청이 소유자를 ㄱ씨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이와 같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현황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총 12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 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비상소집’ 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 공직기강 ‘비상소집’으로 부대 이동 중 교통사고로 영구장애 입은 군인
 - 중앙행정심위 “비상소집이라도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해야”

(‘23. 10. 12 국민권익위)

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정심위)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 ※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각각 인정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7월 ㄱ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ㄱ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 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 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軍)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